

2012 NHERI 리포트 제163호 (2012. 1. 12)

작 성 : 김운성 책임연구원(6399-5939)  
yskim11@nonghyup.com  
채성훈 수석연구원(6399-5959)  
seeyouagain@naver.com  
김유섭 수석연구원(6399-5947)  
nayasup@nonghyup.com

감 수 : 전찬익 농업정책연구실장(6399-5962)  
cic5630@yahoo.co.kr

#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

---

## ■ 목 차 ■

---

I. 농업 · 농촌 .....	1
II. 유통 .....	9
III. 금융 · 세제 .....	16
IV. 복지 · 기타 .....	27

---



## 세부목차

### I. 농업·농촌

1.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/ 1
2. 쌀농업직불제 도입 / 2
3. 농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/ 2
4.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범위 및 품목확대 / 3
5.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개선 / 4
6.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/ 5
7.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/ 6
8.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/ 6
9.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 / 7

### II. 유통

1.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/ 9
2.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 강화 / 9
3. 구제역 백신 비용 50% 자부담 / 10
4.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/ 10
5.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 시행 / 10
6.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/ 11

7.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/ 11
8. 친환경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실시 / 11
9.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/ 12
10.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/ 12
11. 식품안전 교육 명령제 도입 / 13
12.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용기 상용화 / 13
13. 물류창고 등록제 실시 / 14
14. 농약 판매업의 의무 등록제 도입 / 14
15. 농식품 공통 인증 로고 도입 / 14

### III. 금융·세제

#### [금융부문]

1.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/ 16
2.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 / 16
3.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/ 16
4. 청약저축 불법거래시 청약제한 / 17
5. 지방세 카드 납부 및 온라인 조회 가능 / 17
6. 신협·타조합 조합원 대출한도 설정 / 17
7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 규제 완화 / 17
8. 회원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 개선 / 18
9. ELW 유동성공급자 호가 제한 / 18

10.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/ 18
11. 코스피 200 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상향 / 18
12. 회원 합의에 의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 / 19
13. 시장감시위원회 회원 제재 관련 제도 개선 / 19
14. 보험계약체결시 전자서명 허용 / 19
15. 보험사 해외자회사 채무보증금지 예외적용 / 19
16.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 포함 / 20
17. 공제계리업무 종사자 보험업종사경력 인정 / 20
18.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도입 / 20

## [세제부문]

1.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/ 21
2. 법인세 과세표준 중간수정 및 중간세율 신설 / 21
3.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세 중과 폐지 / 22
4.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/ 22
5.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 / 23
6.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지원 / 23
7.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/ 24
8.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제도시행 / 24
9. 주택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/ 24
10.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/ 25
11. 기타 세제 관련 / 25

## IV. 복지·기타

1.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시행 / 27
2. 농어촌지역 보육지원 개선 / 27
3. 농어민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지원 개선 / 28
4.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/ 28
5.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/ 28
6.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지원 확대 / 29
7. 동물보호법 개정 / 29

## I. 농업·농촌

### 1.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

- FTA 이행에 따라 해당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,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되는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됨
  - FTA 이행으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과거 5개년 평균가격대비 90% 미만으로 하락할 때, 그 차액의 90%를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개선됨
    - 기존에는 평균가격보다 85%미만으로 하락할 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음
  - 또한 매년 ‘평균가격’ 산정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농산물 가격의 실질하락분이 반영되도록 개선
  - 2012년도 예산은 630억 원으로, 2011년도(263억 원)보다 360억 원 이상 증액됨
    -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은 5천만 원, 개인은 3천5백만 원임
    - 한·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시행기간은 10년간으로 연장됨 (기존 7년간)

## 2. 발농업직불제 도입

-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발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신규 도입
  - 한·미 FTA 피해대책의 하나로 발농업직불제가 마련됨
  -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재배면적 1 ha당 연간 40만원 지급
    - 고소득 품목이 아니면서,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이 대상이 됨
    - ※ 대상품목 : 밀, 콩, 보리(겉·쌀·맥주), 옥수수, 호밀, 조, 수수, 메밀, 기타 잡곡, 팥, 녹두, 기타 두류, 조사료, 땅콩, 참깨, 고추, 마늘
  - 2012년 사업예산은 624억 원, 대상면적은 143천 ha이며 약 681천 호 농가(2011.11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)가 대상이 됨
  - 이번 발농업직불제는 2015년까지 시행되며 이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통합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

## 3. 농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(시행 2012.7.1일)

-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·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됨



- 임대차계약에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가 제3자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함
  - 임차인이 시·구·읍·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,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
  - 농지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이 신설됨(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)
  
- 임차인이 계획적·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,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
  - 농지법 제 24조 제2항이 신설됨 (농지 임대차 기간 신설)

#### **4.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범위 및 품목확대 (시행 2012년 1월 25일)**

-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대비하여 재해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
  
-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2011년 50개에서 2012년 61개로 확대되며, 전국시행 운영품목이 12개 품목에서 18개 품목으로 늘어남
  - 새롭게 추가된 품목 : 인삼, 오디, 파프리카, 멜론, 녹차, 오소리, 참돔, 감성돔, 돌돔, 쥐치 기타 불락 등 11개 품목
  - 전국시행 운용품목

- 기존 : 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, 감귤, 단감, 뽕은감, 자두, 참다래, 콩, 감자, 양파 등 12개 품목
- 추가(2012년부터) : 밤, 벼, 고구마, 옥수수, 마늘, 매실 등 6개 품목

- 복숭아, 포도에 이어 사과, 배, 단감, 뽕은감, 감귤이 특정위험방식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보상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됨
-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됨
- ‘임산물’이 새롭게 법안에 포함됨

## 5.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개선

-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원하는 직불제인 친환경농업제와 조건 불리지역직불제의 단가가 향상됨
-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경우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, 해당 농가의 소득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높임
- 직불금 단가를 50%수준 상향 조정하고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(기존 3년)으로 연장함
- ※ 직불금 단가 : (만원/ha) (논)31~39→40~60  
(밭)67~79→100~120

-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지방비가 투입되는 바, 이를 줄여 지자체 부담을 경감
  -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행 30%에서 20%로 완화
    - ※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단가는 밭 50만원/ha, 초지 25만원/ha이며, 기존에는 이중 국비 70%, 지방비 30%임

## 6.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(시행 2012.1.1일)

- 가축분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량 육상처리하고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됨
- 「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(런던의정서)」이 발효됨에 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
- 2012년 1월~3월까지 「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」으로 지정되어 지자체 단위로 ‘특별관리지역’을 분류하여 집중관리하게 됨
- 이 기간 동안 문제농가에 긴급 출동해 진단하고 처리시설 등을 긴급 설치하는 ‘긴급대응체계’가 가동됨
- 가축분뇨처리 관련 위반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음

## 7.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(시행 2012. 5. 22일)

- 쌀의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고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며,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
  - 국내 생산량과 의무수입량(MMA) 증가에 따른 쌀 재고량 증가와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한 대책으로, 단기적인 ‘재고처분’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쌀 소비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임
  -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쌀 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됨
  - 쌀 가공업자는 원료조달, 시설개선, 판로개척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정부는 필요할 경우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
  - 쌀 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,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

## 8.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(시행 2012.5.22일)

-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적극 육성하여 도·농의 균형발전과 정서순화,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

- 도시농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단체는 ‘도시농업공동체’로 등록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
- ‘도시농업지원센터’ 등을 설치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제공
- 지자체 장은 ‘공영도시농업농장’을 개설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인은 ‘민영도시농업농장’을 개설·운영할 수 있음
  - ‘민영도시농업농장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
- 이 밖에 도시농업 전문인력이 육성되며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지원됨

## 9.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

- 2011년 처음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왔으나 수도작의 짧은 임대기간, 침수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,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선
  - 기존의 수도작 임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
  - 간척지 특성(침수)에 따라 영농구역을 자율영농구역과 타작물영농구역으로 구분
  - 영농구역에 따라 임차인 선정에 차등을 둠

- 자율영농구역(침수지역) : 경합시 추첨(타작물 우선 없음)
- 타작물영농구역(침수안전지역) : 타작물 우선
- 임대면적의 배분은 관리·처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
- 이번 개선방안은 앞으로 3년(2012~2014) 동안 한시 적용하며 2014년에 개선방안을 재검토함

## II. 유통

### 1.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(시행 2012.1.1일)

-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
  - 대형마트, 백화점,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서면계약 없이 구두상으로만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약 조건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
  - 공급업체는 대형유통업체에 계약일자, 대금 지급수단 등 주요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대형유통업체는 이에 대해 확인 또는 부인의 서면통지를 해야 함
  - 15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며 추후 피해의 구제도 계약내용의 추정에 기초하여 산정하게 됨

### 2.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 강화

- 공동선별비, 포장재비, 결구 무배추 포장유통비 지원 대상 제한
  - 공동선별비는 (기존) 공동선별 생산자 조직에서 (변경)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중 공동선별액 15억 원 이상인 조직으로 한정
  - 포장재비와 무배추 포장유통비도 반드시 법인화된 조직에게만 지원되므로 산지유통인의 경우 개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

### 3. 구제역 백신 비용 50% 자부담 (시행 2012.1.1일)

- 구제역 백신 구입비의 자부담제 실시 (2012.1.1일)
  - 그간 정부가 일괄 구매·공급하던 구제역 백신을 축산농가가 50% 부담하여야함
  - 단, 소 50 마리, 돼지 1,000 마리 이하의 농가는 자부담 의무에서 면제되어 여전히 정부 100%로 지원함
  - 그 외 염소·사슴 농가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함

### 4.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(시행 2012.1.22일)

- 김치 품질 향상과 김치 문화의 계승 및 발전, 김치 세계화 촉진 등
  - 김치사업자에 대한 원료조달, 판로개척 등의 경영개선과 연구개발, 교육 훈련, 전문가 양성, 품평회 개최, 자조금 조성 등을 종합 지원

### 5.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 시행 (시행 2012.1.22일)

-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 (2011.9.10)
  - 시·도지사는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2012.1.1일부터 심사평가를 통해 국고지원 지구를 선정
  - 우수 외식업 지구로 선정될 경우 연 1회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, 경영개선, 공동마케팅, 홍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



## 6.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(시행 2012.1.1일)

-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고시 제정 예정 (2012.2.5일)
  -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그 인증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를, 축산농가에게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
  - 2012.2.5일부터 산란계를 시작으로 연도별·축종별 순차 시행
  - 이번 인증제는 ‘동물보호법’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률은 동물학대 금지, 반려동물 의무등록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

## 7.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(시행 2012.4.11일)

- 배추김치와 수산물에 대해 적용 범위가 확대
  - 반찬용 김치에만 국한된 원산지 표시를 찌개용 및 탕용에도 적용토록 의무화
  - 수산물은 넙치(광어), 조피볼락(우럭), 참돔, 낙지, 미꾸라지, 뱀장어(민물장어)를 생식용, 조리용,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
  - 2012.3.31일까지는 지도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

## 8. 친환경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실시 (시행 2011.10.20일)

- 민간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공시된 유기농자재의 품질평가가 가능

- 기존에는 유기농자재인지 여부만을 공시하여 그 품질상태는 알 수가 없었음
- 금년부터는 유기농자재의 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인증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

## 9.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(시행 2012.1.1일)

- 기존 종이식 은누리 상품권에 추가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 출시
  - 종이식 은누리 상품권은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였음
  -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5만원권, 10만원권 두 종류의 상품권이 기업은행 지점에서 구매 가능함
  - 전자상품권은 옥션/G마켓의 전통시장관과 전통시장 내 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
## 10.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

- 144개 시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준칙 개정(지자체별 시행)
  - 현재 무상 또는 정액제로 수거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증가하도록 차등 납부제 실시

- 시행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RFID(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, 전자칩)기반의 수거시스템도 사업 지역을 17개소로 확대 예정

## 11. 식품안전 교육 명령제 도입 (시행 2011.12.8일)

- 부적합 식품 등을 수입한 자에게 식품안전 교육을 명령
  - 부적합 조치 관련 식품위생 제도, 관련 법령 사항, 부적합의 원인 규명과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여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
  - 그 대상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식품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3시간 이내의 교육을 수료토록 함

## 12. 표준형 접이식 플라스틱 용기 상용화 (시행 2012.1.1일)

- 일관 수송이 가능한 접이식 대용량 플라스틱 상자 개발 완료
  - 기존에는 상자 규격이 혼재되어 운반 하역과정에서 포장 해체 및 재포장 등 부가적 작업이 자주 발생하던 문제점을 대용량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함으로써 개선함
  - 펼쳤을 때 높이가 1,065mm이며 접었을 때는 396mm임

### 13. 물류창고 등록제 실시 (시행 2012.2.5일)

-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
  - 연면적 1,000m<sup>2</sup> 이상, 야적창고 등 대지는 4,500m<sup>2</sup> 이상 규모의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해야함

### 14. 농약 판매업의 의무 등록제 도입 (시행 2012.1.26일)

- 등록하지 않을 때는 일체의 인터넷, 전화 판매행위가 금지됨
  - 인터넷, 전화 등으로 청소년에게 농약을 무단 판매하거나 부적합 약재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
  - 무등록 판매업을 계속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
  - 다만 천연식물보호제와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살포 농약 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인터넷, 전화 판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판매업 등록의무는 준수해야함

### 15. 농식품 공통 인증 로고 도입 (시행 2012.1.1일)

-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인증 표시를 한가지로 통일

- 친환경농축수산물, GAP 및 지리적표시, 우수식품 등 농식품별로 인증 표시의 형태가 다양하던 것을 하나의 형태로 통합
  
- 농식품 공통 인증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다양한 인증 표시가 초래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인증표시제의 경쟁력을 향상
  
- 다만 제도 변경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인증 로고와 포장재는 2013년까지 사용가능함

### Ⅲ. 금융 · 세제

#### [금융부문]

#### 1.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
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2011년 12월 26일부터 4.7%에서 4.2%로 인하되었으며, 금리인하 기한을 2012년까지 연장
  -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4,000만 원 이하에서 5,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,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

#### 2.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

- 1인 가구 등 소형오피스텔 거주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전세자금을 소형오피스텔에도 동일하게 적용
  -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금리는 연 4.0%이며, 가구주 연소득이 3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, 저소득 가구는 연 2%의 저금리를 적용
  - 지원대상자는 월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내 소득자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야 함

#### 3.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

-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하여 현재 연 2%의 저리 건설자금 지원을 2012년까지 연장

#### 4. 청약저축 불법거래시 청약제한

- 청약저축 불법거래시 3~10년까지 청약제한을 받으며, 불법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및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임
  - 보금자리주택은 10년,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, 그 외 지역은 3년간 청약 불가

#### 5. 지방세 카드 납부 및 온라인 조회 가능

- 지방세 납부가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 통장 또는 모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, 조회가 가능

#### 6. 신협외 타조합 조합원 대출한도 설정

-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, 신협외 비조합원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출한도 제한

#### 7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 규제 완화

-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공급·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등 영업용순자본(NCR: Net Capital Ratio) 규제를 완화
  - 특정주식을 대량 보유했을 때 NCR 평가에 반영하던 집중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
  -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과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액 산정방식도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NCR 차감대상에 제외하는 방식으로 합리화

- 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위험액을 바젤 기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이 강화
  - 영업용순자본비율(NRC)은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임

## 8. 회원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 개선

- 전자통신방법의 주문수탁시 반드시 회원의 보안장치를 경유하고, 회원이 호가 적합성 등을 직접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

## 9. ELW(Equity Linked Warrant: 주식워런트증권) 유동성 공급자 호가 제한

-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동성공급자(LP)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

## 10.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

- 외국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, 상장주선인 역할 및 책임강화, 외국기업 상장폐지 관련 기준 강화

## 11. 코스피 200 옵션시장의 거래승수 상향

-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의 문제점 해소와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행 10만원인 옵션 승수를 선물과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인상



## 12. 회원 합의에 의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

- 정상(직전) 가격대비 1/3이상이 괴리되고,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회원간 합의하여 KRX(한국거래소)에 착오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KRX가 착오거래 규제

## 13. 시장감시위원회 회원 제재 관련 제도 개선

- 회원의 이의신청, 직권재심 등의 사유시 기납부된 회원 제재금과 환급일까지의 가산금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 - 회원에 대한 임직원 징계요구시 현행 양자선택형 징계요구 방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요구 방식으로 변경
  - 회원 제재금 부과기준의 중대성 판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, 위규 정도에 따라 부과액 차이 확대

## 14. 보험계약체결시 전자서명 허용

- 보험계약시 '전자서명'이 허용되어 상품설계 수정을 위해 설계사의 잦은 가입자 방문 등 소비자 불편을 해소

## 15. 보험사 해외자회사 채무보증금지 예외적용

- 국내보험사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서 거래·중개사 등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
  - 이를 해결하기 위해 '해외자회사 지급보증'을 허용하되, 지급여력비율이 200% 이상인 보험사에만 허용되며 총자산 3%이내 운용 및 보험금지급채무로 보증대상이 한정

## 16.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 포함

-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은행 및 조합이 추가되고, 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특례가 인정
  - 조합은 2009년 10월 28일 현재, 판매중인 공제상품수준의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받고 있으며, 농작물재해보험 등 '농·어업인 정책보험'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규제(점포 밖 모집 금지 등) 규제적용도 배제

## 17. 공제계리업무 종사자 보험업종사경력 인정

- 보험전문인 자격인정과 관련, '공제계리'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험관계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

## 18.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도입

- 최고속도 25km/h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신규 이륜자동차는 자기인증을 거쳐 1월1일부터, 기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1월1일~6월30일까지 사용신고
  - 전동휠체어, 노약자용 전동스쿠터, 어린이용 전동차, 전기보드, 모터보드, ATV(사륜 사발이) 등은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
- 현행 이륜자동차 상품 및 요율체계와 동일하고 차종이 신설된 이륜자동차보험 상품을 1월 이후 모든 손해보험사가 판매

**[세제부문]**

**1.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**

-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와 서민·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최고세율구간 신설
-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어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8%의 최고세율 적용

〈소득세 과세표준별 세율〉

종합소득과세표준	세율
1,200만원 이하	6%
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이하	15%
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	24%
8,800만원 초과~3억원 이하	35%
3억원 초과	38%

**2. 법인세 과세표준 중간수정 및 중간세율 신설**

- 재정건전성 제고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2%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2억 원 초과구분을 세분
-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~ 200억 원이하는 20%, 200억 원 초과부분은 22% 적용

<과세표준 및 세율>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10%
2억원 초과~200억원 이하	20%
200억원 초과	22%

**3.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세 중과 폐지**

- 1가구 1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보유공제를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도 적용
  -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주택 양도시(잔금, 등기접수 중 빠른 날)부터 받을 수 있음
  -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%, 10년 이상 보유시 최고 30%까지 공제
  
-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
  -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%를,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%를 부과하는 것임
  - 현재 2012년 말까지 취득·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(6~35%)로 과세하고 있음

**4.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**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, 생계형저축,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감면 적용 기한을 2014년말까지 3년 연장

-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생계형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이며, 세금우대조합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9% 분리과세임

## 5.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

-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은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
- 건전한 소비 정착을 위해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분을 25%에서 30%로 확대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30%로 확대하고,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
  -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 초과금액의 20%(신용카드), 25%(체크카드)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

## 6.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지원

- 지금까지 총급여 3,000만 원 이하의 대상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았음
- 2012년부터 총급여를 5,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적용
- 총급여 5,000만 원 이하로 단독세대주인 근로자도 월세소득공제가 가능

## 7.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

-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확정신고만 하게 함
  - 대상자는 신규로 개시한 자, 간이과세자, 직전과세기간 중 납부세액이 없는 자로 한정
  -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제도(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/2 고지)가 적용되나, 신규사업자,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있음

## 8.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제도시행

- 일정 규모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다음 년도 6월 30일 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  -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회계법인을 통하여 '성실신고 확인'을 받음
  -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은 다음연도 2월 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
## 9. 주택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 1년 연장

-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는 2012년 말까지 주택 취득세가 50% 감면되어 2%의 취득세율 적용

- 9억 원 이상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은 일반세율 4% 적용
-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취득(잔금, 등기접수 중 빠른 것)분부터 적용

## 10.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

-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3~5% 감면
  -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란 설계와 시공 유지,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

## 11. 기타 세제 관련

- 1세대 1주택 조건 완화
  - 1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가능하고, 일정규모 이하 임대주택 외 거주용 1주택(고가주택제외)도 양도당시 3년 보유,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
- 임원퇴직금 근속년수당 인정한도액 제한
  -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의 근속년수당 인정한도액을 3년 평균 연봉의 30%까지로 제한

2,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하

- 한·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%, 1차 연도에 7%, 2차 연도에 6%, 3차 연도 이후에는 5%로 인하(현재 10%)

수도요금 이체 다양화

-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 가능

공공임대건물 입주요건 강화

- 공공임대 건물의 입주요건을 소득과 부동산 및 자동차 배기량으로만 확인한 것을 2012년 2월 5일 부터는 금융·보험 자산규모까지 포함하여 입주자 선정



## IV. 복지 · 기타

### 1.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시행 (시행 2012.1.2일)

-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(방송 대학, 통신 대학, 방송통신 대학, 사이버대학)에 대한 학자금 용자 지원을 시행함
-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용자 지원을 함
- 용자 대상은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임
-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,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함

### 2. 농어촌지역 보육지원 개선

- 농어촌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늘리고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며 보육교사 급여수준을 개선함
- 우수한 보육교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근무 수당 지원
  - 3만 7천여 명 대상, 월 11만원 지원
- 민간 보육시설 진입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경로당 등 기존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법인 어린이집 운영지원

### 3. 농어민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지원 개선

-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임
  - 2011년 예산집행시의 부족액과 2012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함
  - 아울러 여성농어업인 연금보험료(국민연금)를 지원함
  - 이에 따라 2012년 관련예산은 330억 증액됨

### 4.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

- 2012년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됨
  - 기존 격주 5일제 수업제가 농어촌 지역 초·중·고를 포함한 전국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됨
  - 농어촌, 저소득층,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 토요일에도 돌봄·교육 서비스 제공

### 5.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

-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‘부양의무자’의 소득기준을 완화함

- 기존에는 기초 생활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합이 최저생계비의 130%(월 266만원)이었으나 2012년부터 185%(월 379만원, 중위소득 수준)으로 완화됨
-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던 극빈층 6만 천 명이 추가로 수급자로 선정됨

## 6.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지원 확대

- 보육 수요가 높은 ‘일하는 부부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
- 0~4세 보육료 지원, 맞벌이 지원, 농어업인 보육료 지원,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등이 강화됨
- 0~2세는 전 계층이 대상이며 3~4세는 소득하위 70% 가구가 대상임
- 이에 따라 2012년 예산은 23,913억 원으로, 2011년보다 4,567억원 (23%) 증액됨
- 보육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
-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지원이 확대됨

## 7. 동물보호법 개정 (시행 2012.2.5일)

- 농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체계를 강화함

- 동물학대자에게는 징역형이 부과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며, 동물등록제가 전국 확대 실시됨
  -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됨
  - 유기동물 뿐만 아니라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·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학대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를 강화함
  -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며, 인증된 농장은 축사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
  - 동물등록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됨
-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‘동물복지위원회’를 설치함

## 2007 NHERI 리포트

-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(이론적 접근) / 제1호 / 최용주
-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/ 제2호 / 최재학
-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/ 제3호 / 최영조
-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/ 제4호 / 최영조
-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/ 제5호 / 최용주
-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/ 제6호 / 송두한
-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/ 제7호 / 이차수
-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/ 제8호 / 최영조
-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/ 제9호 / 우재영
-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/ 제10호 / 조재근

## 2008 NHERI 리포트

-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/ 제11호 / 송두한
-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/ 제12호 / 구본웅
-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-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/ 제13호 / 김현식
-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/ 제14호 / 윤기태
- 농·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/ 제15호 / 김태성·김현식·안상돈
- 국제회계기준(IFRS)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/ 제16호 / 최재학
-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/ 제17호 / 송두한 / 김현식
-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/ 제18호 / 윤기태·현성현
-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/ 제19호 / 윤기태
-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/ 제20호 / 김태성·김현식·송두한
-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/ 제21호 / 신재근
-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: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? / 제22호 / 최용주
-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/ 제23호 / 이상호
- 신규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/ 제24호 / 김유섭
-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/ 제25호 / 한기인
-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/ 제26호 / 임영선
-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/ 이삼섭·안상돈

-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: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/ 제28호 / 권경섭
-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/ 제29호 / 이현성·윤기태
- 일본의 「논유지직접지불」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-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·축산구조의 재검토 / 제30호 / 손황제
-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/ 제31호 / 송두한·김현식
-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/ 제32호 / 신재근
-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? -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/ 제33호 / 이경원
-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/ 제34호 / 우재영
-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/ 제35호 / 송두한·김현식
-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-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/ 제36호 / 안상돈·안진용·김태성
-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/ 제37호 / 최재학

## 2009 NHERI 리포트

-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/ 제38호 / 김한중
-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/ 제39호 / 이상호
- 2009년 주요 신년사 / 제40호 / 송재일
-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(AI)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/ 제41호 / 이삼섭·안상돈
-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/ 제42호 / 손황제
-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/ 제43호 / 손황제
- 협동조합(은행)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-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/ 제44호 / 송재일
-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-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/ 제45호 / 송재일
-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(I) / 제46호 / 우재영·박희철·박언희
-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/ 제47호 / 신재근
-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/ 제48호 / 이원진
- 유럽연합(EU)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/ 제49호 / 이우식
-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/ 제50호 / 송두한
-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/ 제51호 / 신재근
-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(II) / 제52호 / 우재영·박희철·박언희
-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/ 제53호 / 송재일
-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/ 제54호 / 윤건용
-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「新식량안보지수」 개발·활용 방안 / 제55호 / 이원진
-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/ 제56호 / 김유섭

-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/ 제57호 / 신재근
-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/ 제58호 / 임일섭 · 정동욱
-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/ 제59호 / 안진용
-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/ 제61호 / 송두한 · 김현식
-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/ 제62호 / 윤건용
-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/ 제63호 / 이원진
-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-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/ 제64호 / 채성훈
-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/ 제65호 / 김유섭
-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/ 제66호 / 송재일
-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/ 제67호 / 김태성
- 대만 쌀 생산조정 경과의 실태 / 제68호 / 이원진
- 통화옵션상품 ‘키코사태’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/ 제69호 / 백승오
-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/ 제70호 / 안진용
- 쌀 수급동향과 대책 / 제71호 / 신재근
-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/ 제72호 / 김대현
- 우수조합 사례 연구-10 - 순천농협 :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/ 제73호 / 임영선
- 한·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/ 제75호 / 손황제
- 우수조합 사례 연구-11 - 농협경주시연합사업 :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/ 제76호 / 박희철
-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/ 제77호 / 송재일
-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/ 제78호 / 김유섭
-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/ 제79호 / 김태성
- 우수조합 사례 연구-12 - 횡성 서원농협 :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/ 제80호 / 임영선
-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/ 제81호 / 최재학 · 이판용
- 핀란드 OP-Pohjola(포홀라)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/ 제82호 / 최재학
-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/ 제83호 / 박희철 · 박언희
-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/ 제84호 / 박언희

## 2010 NHERI 리포트

-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「식량안정지수」 개발·활용 방안 / 제85호 / 이원진
-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/ 제86호 / 허 훈·채성훈
-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/ 제87호 / 손황제
- 우수조합 사례 연구-13 - 안성 고삼농협 “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” / 제88호 / 이인우
- 조합경영 사례 연구-14 - 아산 송악농협 :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/ 제89호 / 박희철
- 조합경영 사례 연구-15 - 나주 남평농협 :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/ 제90호 / 최용주·신기엽
-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/ 제91호 / 송두한
-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/ 제92호 / 윤건용·박태영
-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(상): 구주·미주편 / 제93호 / 채성훈·조영수
-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(하): 아주·대양주 및 종합편 / 제94호 / 채성훈·김유섭·조영수
-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(프랑스, 독일 사례) / 제95호 / 최재학
- 농정과 농협의 역할 / 제97호 / 황명철
- 우수조합 사례 연구-16 - 정읍농협 “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” / 제98호 / 이인우
-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/ 제99호 / 윤건용·박태영
- 조합경영 사례 연구-17 - 도드람양돈협동조합 :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/ 제100호 / 박희철
-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-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/ 제101호 / 이판용
-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/ 제102호 / 윤건용
-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/ 제103호 / 채성훈
-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/ 제104호 / 박태영
- 조합경영 사례연구-18 - 고흥 두원농협 :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/ 제105호 / 송재일
-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/ 제106호 / 윤건용
- 조합경영 사례연구-19 - 충북원예농협 :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/ 제107호 / 최희원
-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/ 제108호 / 황명철
-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/ 제109호 / 김유섭
-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/ 제110호 / 박태영
- 우수조합 사례 연구-20 - 서울 관악농협 “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” / 제111호 / 이인우
- 조합경영 사례연구-21 - 울산 농소농협 :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/ 제112호 / 송재일
-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/ 제113호 / 전찬익



- 우수조합 사례 연구-22 -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“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” / 제114호 / 이인우
- 바젤 III(안)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/ 제115호 / 윤건용·박태영
- 조합경영 사례 연구-23 - 광주축산농협 : 고객만족(CS)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/ 제116호 / 박희철
- 조합경영 사례연구-24 - 부산 대저농협 :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/ 제117호 / 최희원
- 조합경영 사례연구-25 - 파주 금촌농협 : “조합원 최우선” 경영철학을 실천 / 제118호 / 송재일
- 고행화·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/ 제119호 / 김유섭
-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/ 제120호 / 신기업
- 1995~2009 「식량안정지수」와 시사점 / 제121호 / 조영수
-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(I) / 제122호 / 박태영
-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(II) / 제123호 / 박태영
-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/ 제124호 / 박재홍·황명철·전찬익
-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/ 제125호 / 최재학
-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/ 제126호 / 윤건용·박태영
- 중국 농업·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/ 제127호 / 전찬익
-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/ 제128호 / 윤건용
-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-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/ 제129호 / 전찬익
-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/ 제130호 / 조영수
-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/ 제131호 / 박재홍
- 일본의 농업·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/ 제132호 / 황명철

## 2011 NHERI 리포트

-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/ 제133호(2011.1.19) / 조영수·채성훈·허 훈
-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/ 제134호(2011.1.24) / 윤건용·최성중
-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/ 제135호(2011.1.28) / 김유섭
- 미국·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/ 제136호(2011.3.14) / 전찬익
-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/ 제137호(2011.3.21) / 조영수
-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/ 제138호(2011.3.31) / 김응규
-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/ 제139호(2011.3.31) / 박재홍

- 농업·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/ 제140호(2011.5.13) / 김응규·박재홍·전찬익·조영수
- 북·중 경험의 동향과 시사점 / 제141호(2011.5.16) / 최희원·이판용
-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/ 제142호(2011.6.29) / 이삼섭·안상돈·정준호
-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/ 제143호(2011.6.30) / 윤건용
- 농지 유통화·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-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/ 제144호(2011.7.8) / 전찬익
-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- RPC 사례를 중심으로 / 제145호(2011.8.16) / 유춘권·전찬익
-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/ 제146호(2011.8.17) / 김태성
-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/ 제147호(2011.8.22) / 윤건용
-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/ 제148호(2011.8.25) / 박재홍
-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/ 제149호(2011.9.26) / 유춘권
-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/ 제150호(2011.9.30) / 이삼섭·안상돈·정준호
-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/ 제151호(2011.10.26) / 전찬익
-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/ 제152호(2011.10.28) / 송두한
-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/ 제153호(2011.10.31) / 양선주
-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/ 제154호(2011.11.1) / 윤건용
-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/ 제155호(2011.11.9) / 최성중
-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/ 제156호(2011.11.24) / 김태성
-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/ 제157호(2011.11.24) / 김유섭
-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/ 제158호(2011.11.28) / 임일섭
-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/ 제159호(2011.11.28) / 안상돈·이삼섭·정준호
-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/ 제160호(2011.11.29) / 서충원
-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/ 제161호(2011.11.30) / 서충원
-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/ 제162호(2011.12.19) / 김윤성

## 2012 NHERI 리포트

-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/ 제163호(2012.1.12) / 김윤성·채성훈·김유섭